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6. 19 선고 2024가단7024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6. 12.

판 결 선 고 2024. 6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5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90%는 원고가, 1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30,136,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(다만, ‘채권자’는 ‘원고’, ‘채무자’는 ‘피고’라 한다)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3. 일부 기각하는 부분

가.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(별지 2)

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(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). 원고는,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이외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도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물품대금

원고는, 원고가 피고의 물품대금채무 23,136,1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23,136,1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수하였다거나 그 매매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판사 김태형

별지